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25
----------	------

발의년월일 : 2021. 3. 5.

발의의원 : 전경원 의원
강민구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송영헌 의원
윤기배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대구에서도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건축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접한 주변의 건조환경 및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특색있고 새로운 경관연출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미터 이내 및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 나. 현행 조례의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 정비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토록 함. (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경관법」 등)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 중 “나목(공동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층 이하인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천변 100미터 또는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 경우 하천구역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의 경계로부터 건축물(주동)까지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u>나목(공동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u> <단서 신설></p> <p><신설></p>	<p>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나목</u>에 해당하는 건축물. <u>다만, 20층 이하인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u></p> <p>5. <u>신천변 100미터 또는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 경우 하천구역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의 경계로부터 건축물(주동)까지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한다.</u></p>
<p>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26(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신 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경관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 19. 생략